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이해식 · 김현정
서미화 · 안도걸 · 장종태
조인철 · 박희승 · 이광희
윤건영 · 한정애 · 이언주
이재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,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).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거나 용역계약, 운송계약, 시설이용계약,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교육활동의 운영에 참여하려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인증의 기준, 절차, 유효기간, 사후점검, 인증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학교장은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업체에 한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학교장,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해당 외부기관 또는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, 장비, 교통수단, 숙박시설, 체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위탁 용역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⑨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해당 외부기관 또는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, 장비, 교통수단, 숙박시설, 체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위탁 용역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⑨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학교 및 교직원과의 정당한 지도에 협력하여야 한다.